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·의약품 등의 위해사범 수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관할구역을 권역별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6. 0. ~ 6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26조 관련)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, 강원특별자치도, 경기도(고양시·의정부시·남양주시·파주시·구리시·포천시·양주시·동두천시·가평군·연천군을 포함하며, 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김포시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포함한다) 다만, 제25조제3항제16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.
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	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 다만, 제25조제3항제16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	경기도	인천광역시(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강화군은 제외한다), 경기도(고양시·의정부시·남양주시·파주시·구리시·포천시·양주시·동두천시·가평군 및 연천군은 제외하며, 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김포시는 제외한다)
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	대구광역시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
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	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, 전라북도(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을 포함한다), 전라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	대전광역시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(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서천군을 제외한다)

다만, 제25조제3항제16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**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.**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의2(허가총괄담당관) 허가총괄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.	<삭 제>
제6조의3(첨단제품허가담당관)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.	<삭 제>